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701호 2021. 9. 13.(월)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134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	1
남해군 고시 제2021-137호 평산2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3
남해군 고시 제2021-139호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5
남해군 고시 제2021-142호 도로명 부여 고시 결정 .....	21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1225호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	25
남해군 공고 제2021-1231호 남해군 소하천 잠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남해군 공고 제2021-1232호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9
남해군 공고 제2021-1234호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
남해군 공고 제2021-1239호 남해군계획시설(방재시설:광천소하천) 공사완료 공고 .....	37
남해군 공고 제2021-1241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38
남해군 공고 제2021-1249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	45
남해군 공고 제2021-1264호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1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성과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134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 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일

남 해 군 수

-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천지구(동천천) 일반하천정비사업
-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 본 공사는 기존 하천 하폭부족, 기설 제방 및 호안이 노후하거나 낮아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와 주택 침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일반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농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나. 공사개요
    - 하천정비 : L=291.2m(양안), BOX교 1개소
-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일원
-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2021. 09. ~ 2021. 02.
-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불임참조
- 7.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비치
-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기관인 남해군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남해	삼동	동천	1071-1	구	39	6	국	남해군
2	남해	삼동	동천	1071	답	685	156	김*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9**
3	남해	삼동	동천	1072	답	2,053	130	최*배 외 1인	부산시 사하구 *하로1*2번길 8-1*
4	남해	삼동	동천	1073	답	324	277	이*택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6-*0 오 성**맨션 2-1*6
5	남해	삼동	동천	1075-1	답	1,326	321	강*수	경남 남해군 삼동면 *화금로 1*5-*0
6	남해	삼동	동천	1074-2	답	701	179	강*수	경남 남해군 삼동면 *화금로 1*5-*0
7	남해	삼동	동천	1074-1	답	661	150	강*수	경남 남해군 삼동면 *화금로 1*5-*0
8	남해	삼동	동천	2042	구	26,104	591	국	농림축산식품부
9	남해	삼동	동천	975	답	886	119	박*미	부산시 사하구 하신*양로 1*0, 1*1동 1**2호
10	남해	삼동	동천	1051	답	1,129	330	최*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2**
11	남해	삼동	동천	1054	답	879	40	김*식 외 1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108 대동**아파트 105-2204
12	남해	삼동	동천	1055	답	1,600	470	김*식 외 1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1*8 대동**아파트 1*5-2**4
13	남해	삼동	동천	1056	답	1,430	321	최*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6 우* 아파트 2*3-1**5
계						37,817	3,090		

남해군 고시 제2021 - 137호

### 평산2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의거 평산2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7.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평산2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3. 사업비 : 2,130,000천원(국비 1,602,000, 지방비 528,000), 자부담 별도(118,332천원)
- 4. 주요사업내용
  - 생활·위생 인프라 : 마을안길 정비 1식, 가드레일 설치(90m), 상수도개량 1식, 재래식 화장실 정비(22호)
  - 주택정비 지원 : 빈집정비(11호), 슬레이트지붕개량(38호), 집수리(8호)
  - 마을환경 개선 : CCTV 설치(2개소), 보안등 설치(6개소)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마을리더 교육, 건강 프로그램 등

# 남 해 군 공 보

(4) 제 701 호

2021년 9월 13일

※ 분야별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량	사 업 비 / ( )외서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b>합 계</b>			2,130,000 (118,332)	1,602,000	528,000	(118,332)
	소 계		1,097,080	877,664	219,416	
생활·위생· 안전인프라	■ 마을안길정비	1식	678,880	543,104	135,776	
	■ 가드레일설치	90m	4,740	3,792	948	
	■ 상수도 개량	1식	116,180	92,944	23,236	
	■ 하수도 정비	1식	-	-	-	
	■ 재래식화장실정비	22호	297,280	237,824	59,456	
	소 계		644,087	446,570	197,517	(118,332)
주택정비	■ 빈집정비	11호	129,747	90,823	38,924	
	■ 슬레이트지붕개량	38호	455,719	312,410	143,309	(103,795)
	■ 집수리	8호	58,621	43,337	15,284	(14,537)
	소 계		55,862	44,688	11,174	
마을환경 개선	■ 주차장 조성	1식	-	-	-	
	■ 마을회관 리모델링	1식	-	-	-	
	■ CCTV 설치	1식	15,776	12,620	3,156	
	■ 보안등 설치	6개소	40,086	32,068	8,018	
	소 계		45,200	31,640	13,560	
휴먼케어	■ 치매예방 프로그램	1식	10,000	7,000	3,000	
	■ 건강 생활체조 프로그램	1식	10,000	7,000	3,000	
	■ 문화예술 프로그램	1식	15,000	10,500	4,500	
	■ 백서제작	1식	10,200	7,140	3,060	
	소 계		25,000	17,500	7,500	
주민역량강화	■ 마을리더육성교육	1식	10,000	7,000	3,000	
	■ 주민역량강화교육	1식	15,000	10,500	4,500	
	소 계		262,771	183,938	78,833	
제경비	■ 기본 및 마스터플랜수립	1식	39,186	27,430	11,756	
	■ 세부설계비	1식	55,600	38,920	16,680	
	■ 공사감리비	1식	117,193	82,035	35,158	
	■ 사업관리비	1식	24,974	17,481	7,493	
	■ 잡지출	1식	25,818	18,072	7,746	

5.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6.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간)

7. 기타(시행계획 열람 장소)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055-860-3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1 - 139호

###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제80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055-860-8655)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1. 관광지명 : 송정관광지 (변경없음)
2. 위 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20-1번지 일원 (변경없음)
3. 조성면적 : 604,018㎡ (변경없음)
4. 관광지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조성계획 면적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604,018	604,018		100.0	-
공공편익시설지구	106,259	105,101	감 1,158	17.4	주차장 가-1 (감 1,158㎡)
숙박시설지구	166,993	166,063	감 930	27.5	관광숙박·편의시설 나-12 (증 2,460㎡) 관광숙박·편의시설 나-17 폐지 (감 3,390㎡)
상가시설지구	29,156	32,546	증 3,390	5.4	상가 다-10 신설 (증 3,390㎡)
운동·오락시설지구	5,112	5,112	-	0.8	-
휴양·문화시설지구	40,189	39,335	감 1,302	6.5	야영장 마-9 (위치변경, 면적 감소 1,302㎡)
기타시설지구	255,861	255,861	-	42.4	-

## 남 해 군 공 보

(6) 제 701 호

2021년 9월 13일

5.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참조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참조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관광지명 : 송정관광지
2. 위 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
3. 지정면적 : 604,018㎡
4. 사업기간 : 1998년 ~ 2021년
5. 관광지 조성권자 : 남해군수
6.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 가. 시설지구계획(변경)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604,018	604,018	-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106,259	105,101	감 1,158	17.4	주차장, 우수처리장, 샤워탈의장/화장실, 관리사무소, 마을회관, 도로
숙박시설지구	166,993	166,063	감 930	27.5	관광숙박· 편의시설
상가시설지구	29,156	32,546	증 3,390	5.4	음식점, 상가
운동·오락시설지구	5,112	5,112	-	0.8	게이트볼장, 해수풀장
휴양·문화시설지구	40,189	39,335	감 1,302	6.5	야외공연장,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공원, 전망대, 조망휴게소
기타시설지구	255,861	255,861	-	42.4	녹지



# 남 해 군 공 보

(8) 제 701 호

2021년 9월 13일

## 나. 시설지구별 세부계획(변경)

구 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총계	604,018	604,018	-	185,490	-	-	-	-	
공공 편의 시설 지구	소 계	106,259	105,101	감 1,158	3,600	-	-	-	
	주차장(변경)	24,112	22,954	감 1,158	-	-	-	가-1~2	
	오수처리장	2,828	2,828	-	1,000	40.0	100.0	1	가-3~4
	샤워탈의장/화장실	451	451	-	350	40.0	100.0	2	가-5
	관리사무소	2,390	2,390	-	1,900	40.0	100.0	2	가-6~7
	마을회관	436	436	-	350	40.0	100.0	2	가-8
	도 로	76,042	76,042	-	-	-	-	-	-
숙박 시설 지구	소 계	166,993	166,063	감 930	132,850	-	-	-	
	관광숙박·편의시설 (변경)	166,993	166,063	감 930	132,850	40.0	100.0	2,4	나-1~16
상가 시설 지구	소 계	29,156	32,546	증 3,390	25,120	-	-	-	
	음 식 점	3,217	3,217	-	2,500	40.0	100.0	2	다-1~2
	상가(변경)	25,939	29,329	증 3,390	22,620	40.0	100.0	2	다-3~10
운동 오락 지구	소 계	5,112	5,112	-	-	-	-	-	
	게이트볼장	1,065	1,065	-	-	-	-	-	라-1
	해수풀장	4,047	4,047	-	-	-	-	-	라-2
휴양 문화 시설 지구	소 계	40,189	39,335	감 1,302	23,920	-	-	-	
	야외공연장	498	498	-	-	-	-	-	마-1
	청소년수련원	10,884	10,884	-	8,700	40.0	100.0	4	마-2
	야 영 장(변경)	7,768	6,466	감 1,302	5,120	40.0	100.0	2	마-3~4,9
	공 원	8,563	8,563	-	3,400	40.0	100.0	2	마-5~6
	전 망 대	6,492	6,492	-	5,000	-	-	-	마-7
	조망휴게소	6,432	6,432	-	1,700	40.0	100.0	4	마-8
기타 시설 지구	소 계	255,861	255,861	-	-	-	-	-	
	녹 지	255,861	255,861	-	-	-	-	-	바-1

7. 사업비 - 변경없음

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송정관광지	관광·휴양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707번지 일원	604,018	-	604,018		

-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총괄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총계	604,018		604,018	100.0	-
공공편의시설지구	106,259	감) 1,158	105,101	17.4	주차장 가-1 (감 1,158㎡)
숙박시설지구	166,993	감) 930	166,063	27.5	관광숙박·편의시설 나-12 (증 2,460㎡) 관광숙박·편의시설 나-17 폐지 (감 3,390㎡)
상가시설지구	29,156	증) 3,390	32,546	5.4	상가 다-10 신설 (증 3,390㎡)
운동·오락시설지구	5,112	-	5,112	0.8	-
휴양·문화시설지구	40,637	감) 1,302	39,335	6.5	야영장 마-9 (위치변경, 면적 감소 1,302㎡)
기타시설지구	255,861	-	255,861	42.4	-

# 남 해 군 공 보

(10) 제 701 호

2021년 9월 13일

## 2)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도입시설지구			시설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			도입시설지구		시설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			
구분	면적(㎡)	비율(%)	시설명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면적	604,018	100.0				604,018	100.0			-	
공공편의 시설지구	106,259	17.6	소 계	106,259	100.0	105,101	17.4	105,101	100.0	감	1,158
			주 차 장	24,112	22.7			22,954	21.8	감	1,158
			오수처리장	2,828	2.7			2,828	2.7	-	
			샤워탈의장/ 화장실	451	0.4			451	0.4	-	
			관리사무소	2,390	2.2			2,390	2.3	-	
			마을회관	436	0.4			436	0.4	-	
			도 로	76,042	71.6			76,042	72.4	-	
숙박시설 지 구	166,993	27.7	소 계	166,993	100.0	166,063	27.5	166,063	100.0	감	930
			관광숙박· 편의시설	166,993	100.0			166,063	100.0	감	930
상가시설 지 구	29,156	4.8	소 계	29,156	100.0	32,546	5.4	32,546	100.0	증	3,390
			음 식 점	3,217	11.0			3,217	9.9	-	
			상 가	25,939	89.0			29,329	90.1	증	3,390
운동오락 지 구	5,112	0.8	소 계	5,112	100.0	5,112	0.8	5,112	100.0	-	
			게이트볼장	1,065	20.8			1,065	20.8	-	
			해수풀장	4,047	79.2			4,047	79.2	-	
휴양문화 시설지구	40,637	6.7	소 계	40,637	100.0	39,335	6.5	39,335	100.0	감	1,302
			야외공연장	498	1.2			498	1.3		
			청소년수련원	10,884	26.8			10,884	27.7		
			야 영 장	7,768	19.1			6,466	16.4	감	1,302
			공원	8,563	21.1			8,563	21.8		
			전 망 대	6,492	16.0			6,492	16.4		
			조망휴게소	6,432	15.8			6,432	15.8		명칭 변경
기타시설 지 구	255,861	42.4	소 계	255,861	100.0	255,861	42.4	255,861	100.0	-	
			녹 지	255,861	100.0			255,861	100.0	-	

가) 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공공편의 시설지구	◦ 규모축소: 1,158㎡ - 106,259㎡ → 105,101㎡	• 야영장 변경에 따른 시설지구 면적 축소
변경	숙박 시설지구	◦ 규모축소: 930㎡ - 166,993㎡ → 166,063㎡	• 도입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지구 면적 축소
변경	상가 시설지구	◦ 규모증가: 3,390㎡ - 29,156㎡ → 32,546㎡	• 도입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지구 면적 증가
변경	휴양문화 시설지구	◦ 규모축소: 1,302㎡ - 40,637㎡ → 39,335㎡	• 야영장 변경, 도입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지구 면적 축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계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계	26	8,872	76,042	4	3,636	38,552	6	2,363	20,078	16	2,873	17,412
기정	중로	1	80	991	-	-	-	-	-	-	1	80	991
기정	소로	25	8,792	75,051	4	3,636	38,552	6	2,363	20,078	15	2,793	16,421

# 남 해 군 공 보

(12) 제 701 호

2021년 9월 13일

나)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80	소로1-1	소로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보 조 간선도로	2,053	1125-4도	1009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95	1218-1도	소로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13.5	국지도로	903	소로2-5	962-3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85	소로1-1	소로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보 조 간선도로	565	소로1-1	산325-2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44	소로1-1	소로3-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1	소로2-1	소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713	소로1-1	소로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9	국지도로	462	소로2-4	소로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7	국지도로	578	소로1-1	727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73	소로3-6	소로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7	국지도로	805	소로2-2	1034-5잠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7	소로1-1	1030양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55	소로3-3	소로3-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70	소로3-3	소로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32	소로2-4	산327-1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34	소로2-4	1462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7~ 11.5	국지도로	48	소로1-3	896-2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57	소로1-1	산348-12 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1	1.5	산책로	18	소로3-3	소로3-13	산책로			
기정	소로	3	12	6.0	국지도로	67	소로3-1	1230-1전	산책로			
기정	소로	3	13	3~4	산책로	678	소로3-3	산281-8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4	1.5	산책로	14	소로3-3	소로3-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5	2.0	산책로	13	소로3-3	소로3-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6	1.5	산책로	12	소로3-3	소로3-13	일반도로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112	감)1,158	22,954		
변경	가-1	주차장	미조면 송정리 1139일원	20,931	감)1,158	19,77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가-2	주차장	미조면 송정리 1007-2일원	3,181	-	3,18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가-1	주차장	◦ 면적감소(감 1,158㎡) : 20,931㎡ → 19,773㎡	· 송남향 어촌뉴딜 위명업 사업 야영장 조성에 의한 주차장 축소

3) 하수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28	-	2,828		
기정	16	송정 하수도1	미조면 송정리 1176-1	1,430	-	1,430	남해고2009-10 (2009.2.2)	
기정	가-3	송정 하수도2	미조면 송정리 1018	1,398	-	1,39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4)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63	-	8,563	-	
기정	마-5	송정 공원1	소공원	미조면 송정리 754	927	-	92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마-6	송정 공원2	소공원	미조면 송정리 752	7,636	-	7,636	경남고시 2015-173 (2015.4.9)	

# 남 해 군 공 보

(14) 제 701 호

2021년 9월 13일

5)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55,861	-	255,861	-	
기정	바-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369-1번지 일원	14,817	-	14,81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76-2번지 일원	47	-	4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70번지 일원	397	-	39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4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36-1번지 일원	11,304	-	11,30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5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7-3번지 일원	1,331	-	1,33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6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7번지 일원	541	-	54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7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4번지 일원	445	-	44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8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3번지 일원	621	-	62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9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3-1번지 일원	424	-	42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0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753번지 일원	3,123	-	3,12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748번지 일원	6,964	-	6,96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06-1번지 일원	2,782	-	2,782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05번지 일원	190	-	190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4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40-24번지 일원	778	-	77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5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50번지 일원	84,095	-	84,09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바-16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48-12번지 일원	6,518	-	6,51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7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857-6번지 일원	20,832	-	20,832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8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31번지 일원	9,646	-	9,646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9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837-6번지 일원	443	-	44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0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22-2번지 일원	113	-	11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54-2번지 일원	63,651	-	63,65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24-1번지 일원	12,995	-	12,99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904번지 일원	13,804	-	13,80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 남 해 군 공 보

(16) 제 701 호

2021년 9월 13일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604,018	-	604,018				
공공편익 시설지구	가	소계	기정	106,259	-	106,259	감 1,158㎡		
			변경	105,101		105,101			
		가-1	기정	20,931	미조면 송정리 1139번지 일원	20,931	주차장 (감 1,158㎡)		
			변경	19,773		19,773			
		가-2	3,181	미조면 송정리 1007-2번지 일원	3,181	주차장			
		가-3	1,398	미조면 송정리 1018번지 일원	1,398	오수처리장			
		가-4	1,430	미조면 송정리 1176-3번지 일원	1,430	오수처리장			
		가-5	451	미조면 송정리 1175-6번지 일원	451	샤워탈의장/화장실			
		가-6	1,063	미조면 송정리 1124-6번지 일원	1,063	관리사무소			
		가-7	1,327	미조면 송정리 1067-15번지 일원	1,327	관리사무소			
		가-8	436	미조면 송정리 1065번지 일원	436	마을회관			
		-	76,042	-	76,042	도로			
		숙박 시설지구	나	소계	기정	166,993	-	166,993	감 930㎡
					변경	166,063		166,063	
나-1	7,073			미조면 송정리 1230-2번지 등 일원	7,07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2	25,852			미조면 송정리 1104번지 등 일원	25,852	관광숙박·휴게시설			
나-3	3,045			미조면 송정리 719-1번지 등 일원	3,045	관광숙박·휴게시설			
나-4	2,072			미조면 송정리 1036번지 등 일원	2,072	관광숙박·휴게시설			
나-5	4,827			미조면 송정리 1030번지 등 일원	4,82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6	18,687			미조면 송정리 855번지 등 일원	18,68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7	10,698			미조면 송정리 857번지 등 일원	10,698	관광숙박·휴게시설			
나-8	8,164			미조면 송정리 854번지 등 일원	8,164	관광숙박·휴게시설			
나-9	7,290			미조면 송정리 830번지 등 일원	7,29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0	6,157			미조면 송정리 839번지 등 일원	6,15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1	6,553			미조면 송정리 837번지 등 일원	6,55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 2	기정			1,630	미조면 송정리 847번지 등 일원	1,630	관광숙박·휴게시설 (증 2,460㎡)		
	변경			4,090		4,090			
나-13	4,520			미조면 송정리 878번지 등 일원	4,52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4	10,813			미조면 송정리 1009번지 등 일원	10,81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5	24,587			미조면 송정리 903번지 등 일원	24,58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6	21,635			미조면 송정리 896-1번지 등 일원	21,635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 7	기정	3,390	미조면 송정리 862번지 등 일원	3,390	관광숙박·휴게시설 폐지 (감 3,390㎡)				
	폐지	-		-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상가시설 지구	다	소계	기정	29,156	-	29,156	증 3,390㎡
			변경	32,546		32,546	
		다-1		1,984	미조면 송정리 1122번지 일원	1,984	음식점
		다-2		1,233	미조면 송정리 1119번지 일원	1,233	음식점
		다-3		1,665	미조면 송정리 1126번지 등 일원	1,665	상 가
		다-4		634	미조면 송정리 1221번지 등 일원	634	상 가
		다-5		4,764	미조면 송정리 1226번지 등 일원	4,764	상 가
		다-6		560	미조면 송정리 1034-4번지 등 일원	560	상 가
		다-7		9,251	미조면 송정리 870번지 등 일원	9,251	상 가
		다-8		7,083	미조면 송정리 1019번지 등 일원	7,083	상 가
		다-9		1,982	미조면 송정리 1007-1번지 등 일원	1,982	상 가
	다-10	신설	3,390	미조면 송정리 862번지 등 일원	3,390	상가 (증 3,390㎡)	
운동오락 시설지구	라	소계		5,112	-	5,112	-
		라-1		1,065	미조면 송정리 1167번지 일원	1,065	게이트볼장
		라-2		4,047	미조면 송정리 1038번지 일원	4,047	해수풀장
휴양문화 시설지구	마	소계	기정	40,637	-	40,637	감 1,302㎡
			변경	39,335		39,335	
		마-1		498	미조면 송정리 1175-6번지 일원	498	야외공연장
		마-2		10,884	미조면 송정리 1175-4번지 일원	10,884	청소년수련원
		마-3		4,063	미조면 송정리 1124-9번지 일원	4,063	야영장
		마-4		1,245	미조면 송정리 880번지 일원	1,245	야영장
		마-5		927	미조면 송정리 754번지 일원	927	공 원
		마-6		7,636	미조면 송정리 752번지 일원	7,636	공 원
		마-7		6,492	미조면 송정리 892번지 일원	6,492	전망대
		마-8		6,432	미조면 송정리 산352-4번지 일원	6,432	조경휴게소 → 조망휴게소 (명칭변경)
	마-9	기정	2,460	미조면 송정리 산848번지 일원	2,460	야영장 (감 1,302㎡)	
	변경	1,158	미조면 송정리 1142번지 일원	1,158			
기타시설 지구	바	소계	기정	255,861	-	255,861	
		바-1	기정	255,861	미조면 송정리 1369번지 등 일원	255,861	녹 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공공 편의시설 지구)	가-1 / 가-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권 장 용 도	주차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가-3 / 가-4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원순환관련시설	
			권 장 용 도	오수처리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1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5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샤워탈의장 / 화장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6 / 가-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관리사무소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8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마을회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나 (숙박 시설 지구)	나-1 ~ 나-10 / 나-12 ~ 나-15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권 장 용 도	관광숙박·편의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나 (숙박 시설 지구)	나-11 / 나-16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권 장 용 도	관광숙박·편의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다 (상가 시설 지구)	다-1 / 다-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음식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다-3 ~ 다-9 / 다-10 (신설)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권 장 용 도	상 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라 (운동·오락시설 지구)	라-1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권 장 용 도	게이트볼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라-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권 장 용 도	해수풀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마 (휴양· 문화시설 지구)	마-1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권 장 용 도	야외공연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권 장 용 도	청소년수련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3 / 마-4 / 마-9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련시설
			권 장 용 도	야영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5 / 마-6	용도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공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 장 용 도	전망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마-8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 장 용 도	기정	조경휴게소
			변경	휴게소 / 전망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바 (기타 시설 지구)	용도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녹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남해군 고시 제2021-142호

###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9일

### 남 해 군 수

- 1. 고시일(효력발생일) : 2021년 9월 9일
- 2. 고시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 3건 (붙임 참조)
- 4. 도로명 부여 절차

<b>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신청</b>	신청을 받은 날부터	<b>주민의견 수렴공고</b>	주민의견 수렴한 날부터	<b>주소정보 위원회 심의</b>	심의마친 날부터	<b>고시 및 신청인 통보</b>
도시개발사업자 및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직권	⇨ 10일이 내	14일 이상	⇨ 30일 이내	주소정보 위원회 개최	⇨ 10일이 내	· 심의결과 · 내용 및 절차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055-860-36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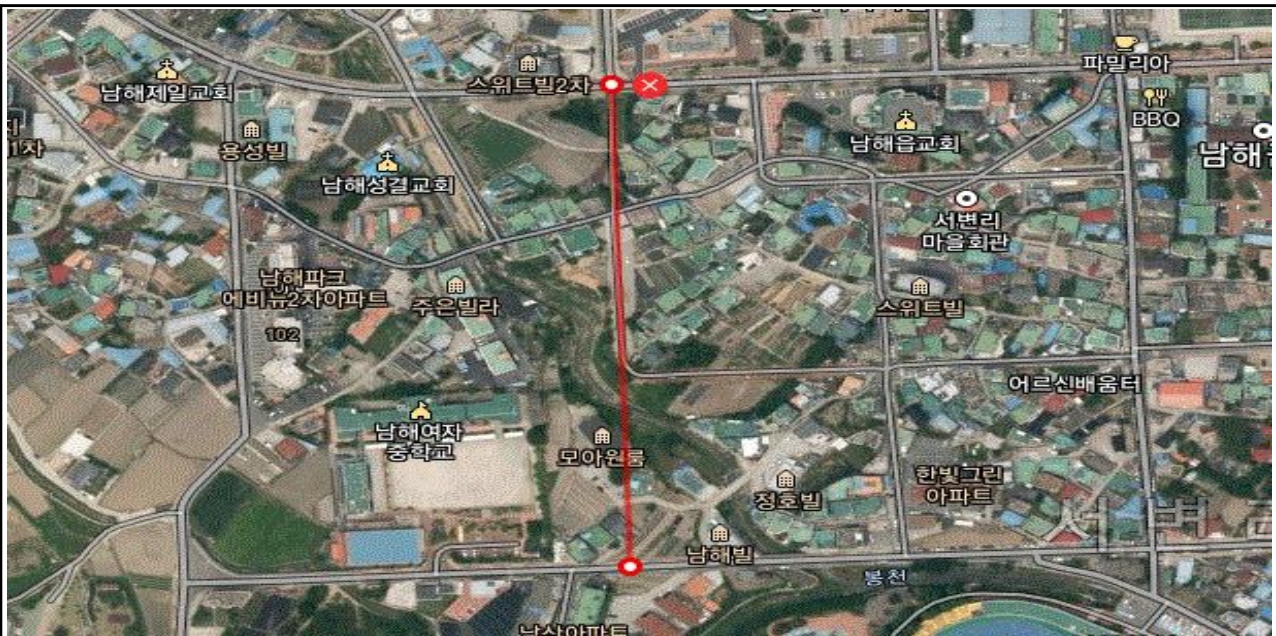
붙임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면 1부. 끝.

[붙임]

<도로명 부여 조서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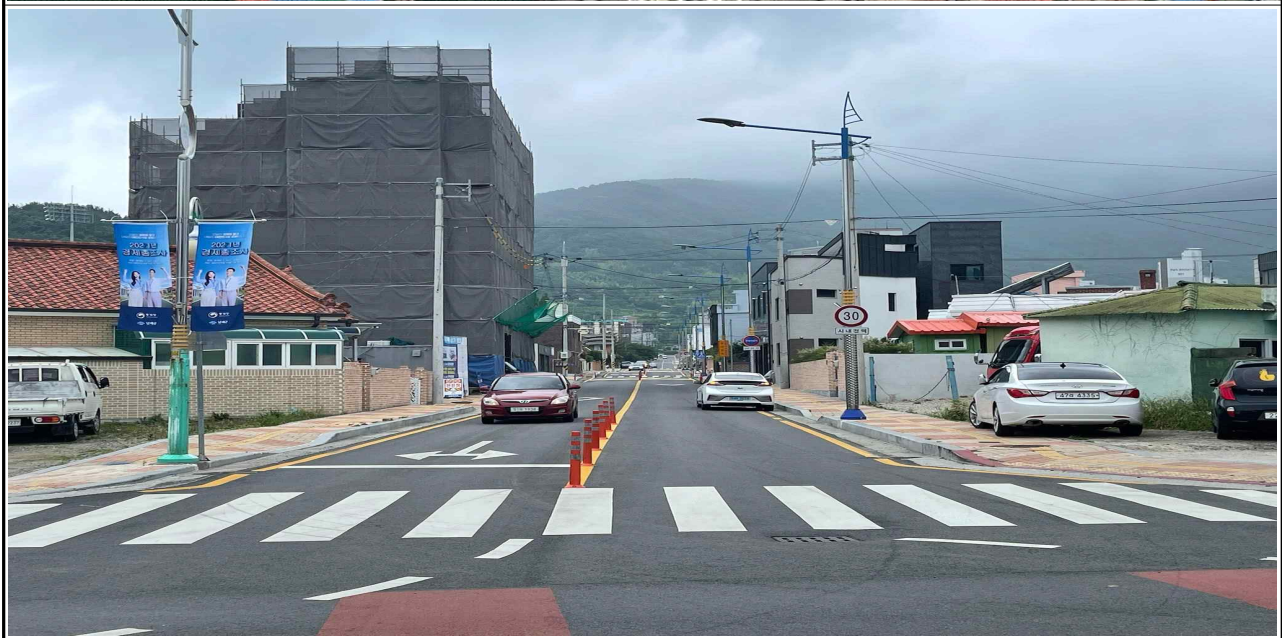
1) 망운로45번길

위 계	행정 구역	예비도로명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기초 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길이 (m)	폭 (m)	시작 지점	끝지점	선형			
길	남해읍	망운로45번길	312	8	아산리 409	서변리 360-3	야래참고	20	32	망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망운로45번길로 도로명 부여



2) 화전로45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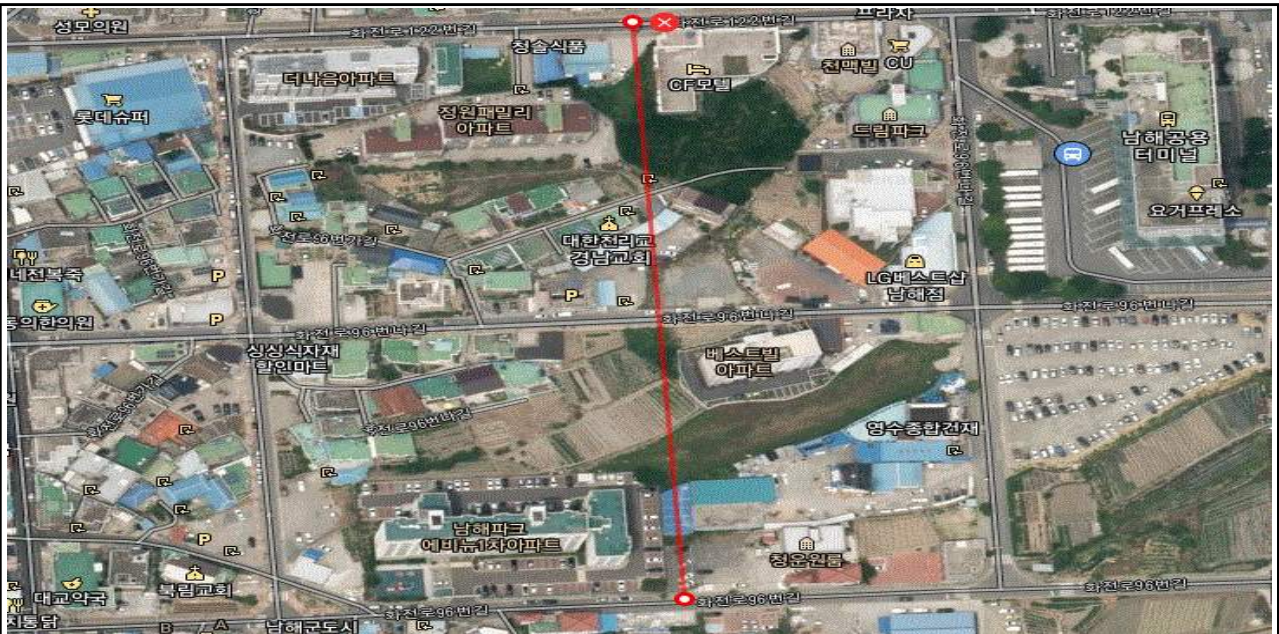
위 계	행정 구역	예비도로명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기초 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길이 (m)	폭 (m)	시작 지점	끝지점	선형			
길	남해읍	화전로45번길	238	8	서변리 149-8	서변리 69-1	야채참고	20	24	화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화전로45번길로 도로명 부여





3) 화전로96번마길

위 계	행정 구역	예비도로명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기초 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길이 (m)	폭 (m)	시작 지점	끝지점	선형			
길	남해읍	화전로96번 마길	122	8	북변리 266-16	북변리 474-4	야채참고	20	26	화전로96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화전로96번마길로 도로명 부여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1225호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로 관리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9. 2. ~ 9. 16.(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통지(정리)내역	비 고
창선면 가인리	146-10	답	60	- <u>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u> - 등록사항정정 완료 시 까지 지적측량 정지	도면복구
창선면 가인리	146-40	답	170	- <u>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u> - 등록사항정정 완료 시 까지 지적측량 정지	면적 및 경계 정정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지적관리팀☎055-860-3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고 제2021 - 1231호

###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주민편의를 위해 허가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 법령의 취지와 상이함이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허가수수료의 징수 (안 제8조)

기 존	개 정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는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1년 9월 28일(화)까지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재난안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94,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는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 ----- ----- . 이 경우 허가 수수료 징수는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1232호

##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부속시설의 경우 조례 상 마을회관과 일단의 구역 안에 있는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공사만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회관과 도로·구거 등으로 분리되거나 인접하지만 일단의 구역에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맹점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지원금액이 2억 5천만원이나 철거·폐기물 처리·토목·조경 등 부대공사비와 설계비·측량비 등 각종 부대사업비의 지출발생, 건축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기존의 예산으로 회관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삭제(안 제2조의 2호)

- 1) “부속시설” 용어 일부 삭제.

나. 마을공동시설 중 마을회관의 신축·재축(再築)·개축 지원기준 상향

- 1)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대한 재정적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9월 2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공공건축추진단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44, 팩스 055-860-375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공공건축추진단 공공건축팀(전화 055-860-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마을회관과 그 일단의 구역 안에 있으면서” 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축·재축(再築)·개축 : 2억5천만원 이하” 를 “신축·재축(再築)·개축 : 3억원 이하”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마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부속시설”이란 제1호의 마을 회관과 그 일단의 구역 안에 있으면서 마을회관의 기능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i> <li>3. ~ 6.(생 략)</li> </ol> <p>제4조(지원기준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마을의 가구와 인구규모, 건축물의 입지, 지원대상 시설물의 신설 또는 개보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회관 신축·재축(再築)·개축 : 2억 5천만원 이하.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li> <li>2. ~ 7. (생 략)</li> </ol>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부속시설”이란 제1호의 마을 회관의 기능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i> <li>3. ~ 6.(현행과 같음)</li> </ol> <p>제4조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 3억원 이하. -- ----- ----- -----.</li> <li>2. ~ 7. (현행과 같음)</li> </ol>

남해군 공고 제2021 - 1234호

##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남해군 소재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여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화(안제2조~제3조)
- 나.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구체화 함(안제4조)
- 다.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제5조)
- 라. 육성사업 추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제6조)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9월 2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632, 팩스 055-860-374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전화 055-860-8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남해군에 소재한 전통사찰, 사우, 서불과차, 고려대장경 등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유적·유물 및 문화예술 양식 등을 말한다.
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통문화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 : 용문사, 보리암, 화방사, 운대암, 법흥사, 망운사
2. 사우 : 남해충렬사, 남해향교, 난곡사, 운곡사, 무민사, 율곡사, 녹동사
3. 서불과차 관련 유적 : 남해 양아리 석각
4. 고려대장경 판각지 및 관련 유적 : 남해 전 선원사지, 남해 전 백련암지, 남해 전 관당성지, 남해 전 망덕사지, 안타골 유적 등
5. 전통문화 및 전승 제례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

**제4조(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전통문화의 취득 및 보수·정비·복원에 관한 사항
- 2. 전통문화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 전통문화의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통문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전통문화의 육성)** 군수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전통문화와 관련된 재현행사 및 교육·체험사업
- 2.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조사, 연구, 편찬사업
- 3. 전통문화 홍보 및 교류·협력사업
- 4. 전통문화 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정비
- 5. 제1호의 수행 장소로 이용되는 전통문화시설의 부속건물 보수·정비
- 6. 그 밖에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1239호

**남해군계획시설(방재시설:광천소하천)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법 제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 9. 13.

남 해 군 수

○ 공사완료 공고대상 사업

번호	시설명	공사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1	방재시설	광천소하천 정비공사	창선면 광천리 1001번지 일원	A=15,711㎡	2018. 3. 9. ~ 2021. 3. 7.	

남해군 공고 제2021 - 1241호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1년도 소하천 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 남 해 군 수

소하천 명	사업 개요									비 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 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전골들천	전골들 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31-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1-1	540	900 (양안)	교량 2개소 배수측구 69m 둑병 5개소 등	2021.09.	2022.12.	재해 예방	토 지 및 지 장 물

열람서류

- 1. 실시설계도서
-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1. 시행계획의 개요

소하천 명	사업 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 효과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전골들천	전골들 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31-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1-1	540	900 (양안)	교량 2개소 배수측구 69m 둑병 5개소 등	2021.09.	2022.12.	2,550	재해 예방

### 2. 세부 정비시행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나.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한 농경지 침수예방과 영농 및 삶의 질 향상
- 공 사 개 요

○ 축제공

- 흙쌓기 : 1,883m<sup>3</sup>,      - 흙막기 : 5,609m<sup>3</sup>
- 사 토 : 7,739m<sup>3</sup>

○ 호안공

- 전석쌓기(제외지) : L=900m A=2,597m<sup>2</sup>
- 석 축(제내지) : L=550m A=741m<sup>2</sup>

○ 배수공

- 배수측구 : 69m      - PE이중벽관(농경지 배수관) : 128m

○ 교량공

- BOX교 : 2개소

○ 포장공

- 제방포장(콘크리트 포장) : 2,590m<sup>2</sup>      - 부체도로 : 5개소
- 접속도로 : 1개소      - 교행차로 : 1개소

○ 부대공

- 기존구조물 철거 및 둑병(옹덩이) 및 중기운반 : 1식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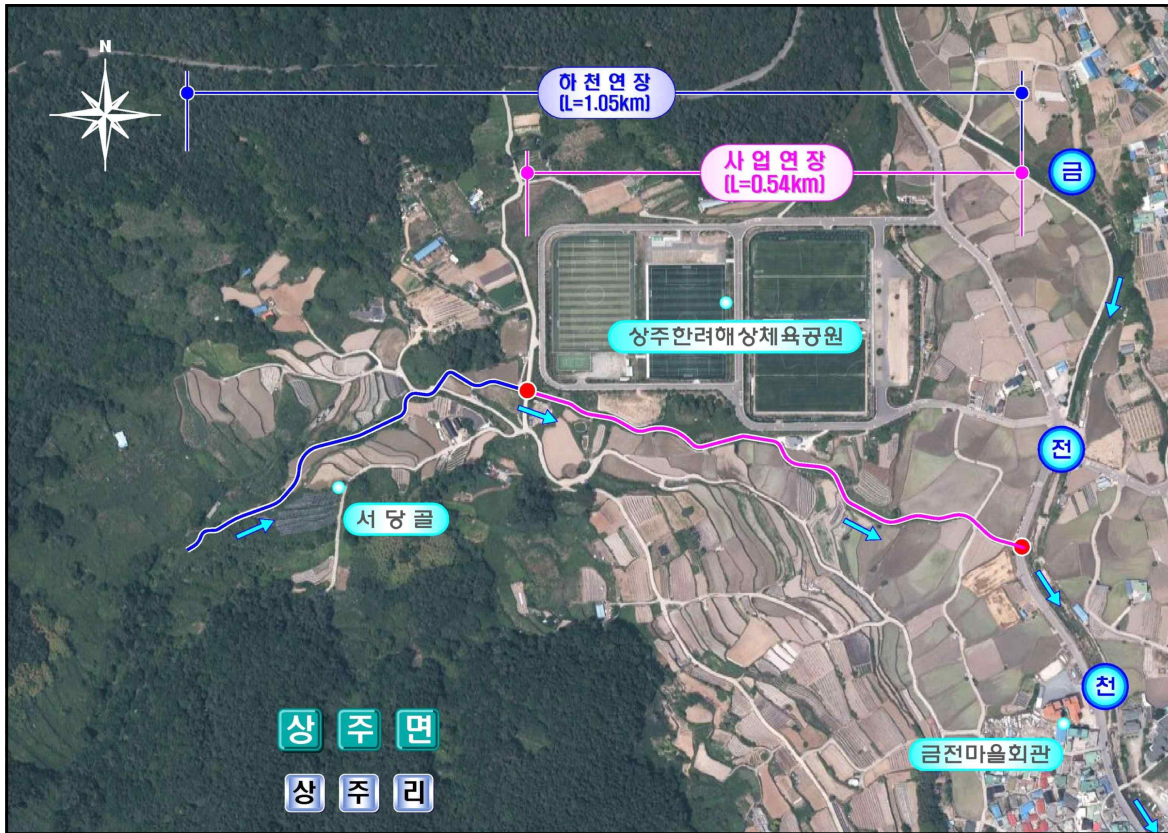
라. 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착공 예정일 : 2021년 09월
- 준공 예정일 : 2022년 12월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 붙임1 참조

-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바.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사.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비치

아. 예정공정표 : 열람서류 참조

자.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

(단위:백만원)

소하천명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전골들소하천	2,550	300	940	1,310	

차.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소하천 부속물에 대하여는 소하천 관리청(남해군 재난안전과)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교량 및 기타 기반시설은 담당부서로 시설물 이관

카. 발생 예상 폐천부지의 면적 : 해당없음

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실시설계도서 참조

파. 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실시설계도서 참조

3. 공람기간 : 2021. 9. 7. ~ 2021. 9. 21.

4. 공람장소 :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3)

5.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055-860-3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전관들소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동리	소재지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09-1	채	1,878.0	820.0	1,058.0	공	남해군					
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2	채	74,263.0	551.0	73,712.0	공	남해군					
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33-1	묘	163.0	163.0		최두0	-					
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8	답	303.0	303.0		공	남해군					
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8-1	답	21.0	21.0		공	남해군					
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09-2	답	8.0	8.0		공	남해군					
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0-3	답	110.0	110.0		김진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지천로					
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1	답	962.0	315.0	647.0	김옥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3-6	답	19.0	19.0		박화0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1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3-5	답	22.0	22.0		박화0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1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3-4	답	2.0	2.0		김준0	서울 강동구 천호동		국(강동세무서)	입류 (87,02.26)		
1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7-1	답	27.0	27.0		공	남해군					
1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27	답	73.0	73.0		공	남해군					
1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8-1	답	395.0	395.0		김준0	서울 양천구 신정동					
1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95-1	답	146.0	146.0		최춘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96-1	답	382.0	382.0		장진0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서부산동업 합동조합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4(양리동), 광천지점	근저당권		

편 입 용 지 조 서

전북토지개발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동리	소재지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권리내용		
1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	천	44,802.0	2,544.0	42,258.0	국	국(국토교통부)					
1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97-1	답	673.0	673.0		이준오	부산광역시 시하구 낙동대로					
1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98-2	답	307.0	307.0		김재호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19	답	104.0	25.0	79.0	국	경상남도					
2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8	답	194.0	46.0	148.0	국	국(국토교통부)					
2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89-1	도	1,690.0	405.0	1,285.0	공	남해군					
2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9	제	267.0	16.0	251.0	공	국(국토교통부)					
2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5-1	답	85.0	85.0		최준오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6-1	답	446.0	446.0		박춘오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2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717-1	답	106.0	106.0		박동오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2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81-1	답	351.0	351.0		이리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남해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상주5리(상주리)467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산로95번길 5 (경동담보 - 토지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4678))	근저당권	
2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80-1	답	41.0	41.0		강현오	울산광역시 남구 상호로	남해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932 (상주지명)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932 (상주지명)	근저당권, 지상권	
2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8	답	235.0	235.0		이리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남해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산로95번길 5 (경동담보 - 토지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468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산로95번길 5 (경동담보 - 토지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4681))	근저당권	
3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6-3	답	128.0	128.0		박성오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5-1	답	8.0	8.0		손남오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4	답	251.0	251.0		손남오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편 입 용 지 조 서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동리	소재지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권리내용		
3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6-4	답	16.0	16.0		남남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3-4	답	17.0	17.0		정진0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서부산농업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4(당리동), 감천지점	근저당권	
35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69-6	답	180.0	180.0		송성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6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68-1	답	110.0	110.0		문정0	부산 사하구 정림동					
37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2-1	답	234.0	234.0		정진0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서부산농업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4(당리동), 감천지점	근저당권	
38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1-2	답	50.0	50.0		김민0	진주시 하대동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진주시(영등포지점) 경상남도 마산지 역전동 246-1	근저당권, 지상권	
39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71-1	도	292.0	210.0	82.0	공	남해군					
4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60-3	도	553.0	188.0	365.0	공	남해군					
합 계					129,914.0	10,029.0	119,885.0							

남해군 공고 제2021 - 1249호

###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88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창선 광천	50000	2021.09.08 2031.09.07 (10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591번길 32	이장근 외 1명(손상여)	191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89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고현 이어	50000	2021.09.08 2031.09.07 (10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15-1	이군찬 외 1명(송선희)	189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90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60000	2021.09.08 2031.09.07 (10년)	남해군 산동면 삼이로24번길 55-20	홍성욱 외 1명(홍은표)	188호 재개발
남해양식 제591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고현 이어	50000	2021.09.08 2031.09.07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78-14	류완석	190호 재개발

※ '20/21년 양식장 ·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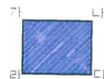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88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60,000	2011.09.08 2021.08.07 (10년)	남해군 산동면 삼이로24번길 55-20	홍성옥 외 1명(홍은표)	
남해양식 제189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고현 이어	50,000	2011.09.08 2021.08.07 (10년)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15-1	이군찬 외 1명(송선희)	
남해양식 제190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고현 이어	50,000	2011.09.08 2021.08.07 (10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78-14	류완석	
남해양식 제191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창선 광천	50,000	2011.09.08 2021.08.07 (10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591번길 32	이장근 외 1명(손상여)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88호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51-40.58, E127-57-47.75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도	경도	거 리
가	34-51-41.160	127-57-01.470	가-나 100
나	34-51-41.161	127-57-11.311	나-다 100
다	34-51-34.671	127-57-11.311	다-라 100
라	34-51-34.671	127-57-01.470	라-가 100



한양토목설계사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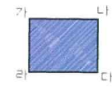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89호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52-03.78 E127-54-00.1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 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52-27.944	127-55-41.304	가-나 250
나	34-52-27.944	127-55-51.147	나-다 200
다	34-52-21.455	127-55-51.147	다-라 250
라	34-52-21.455	127-55-41.304	라-가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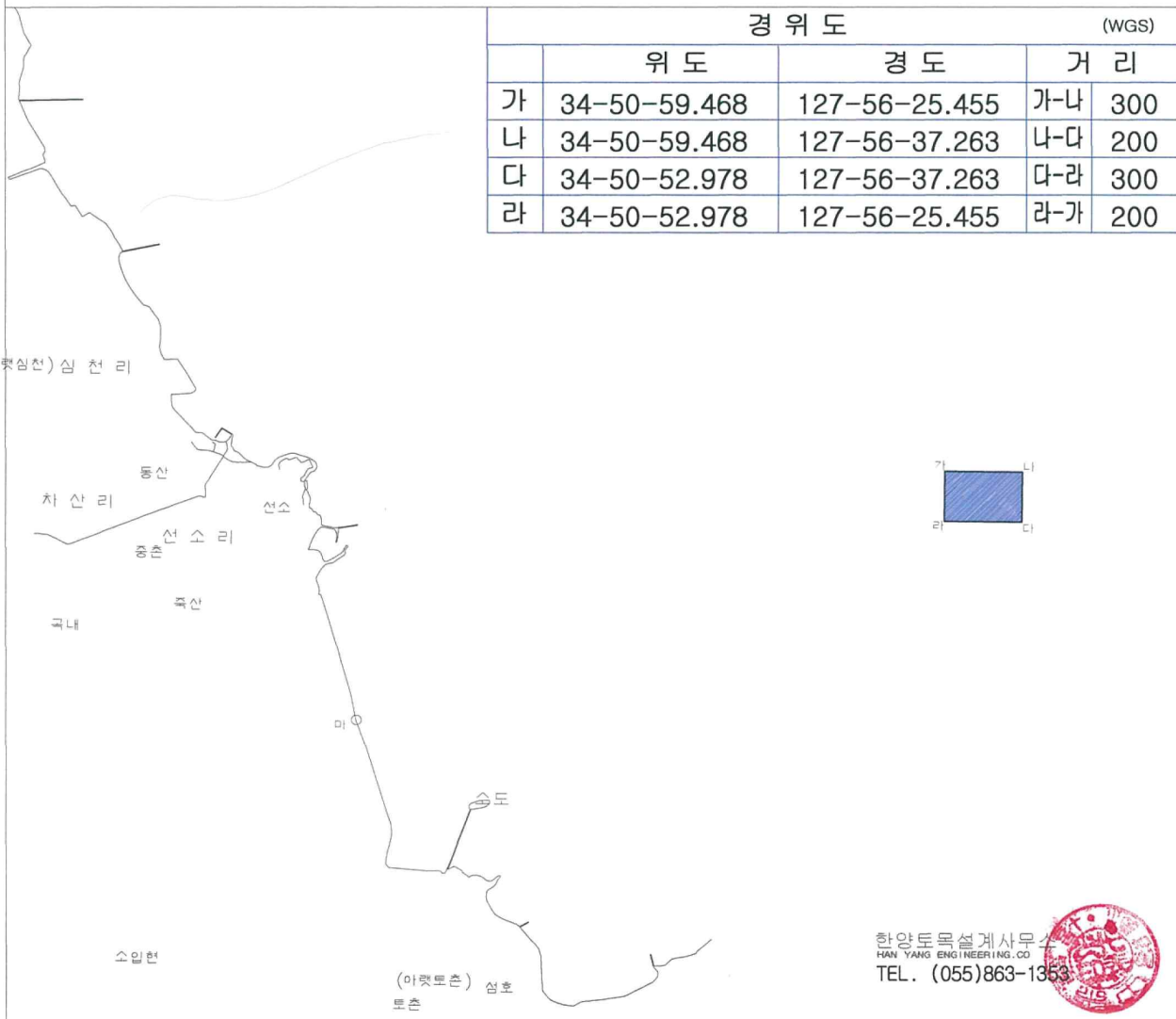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9호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50-26.452, E127-54-57.085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6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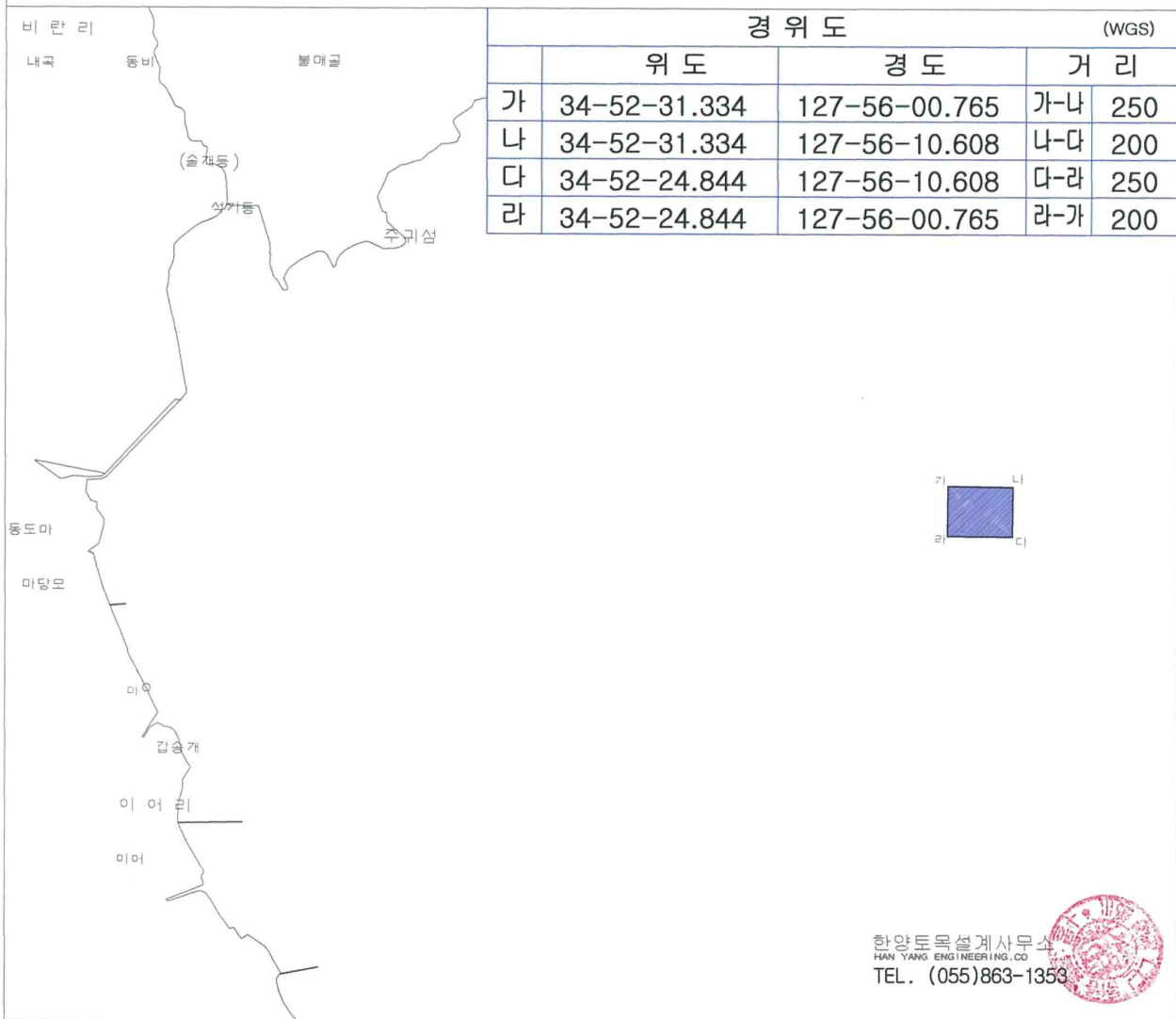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91호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패류양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살포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 기점 및 각점 :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 N34-52-03.78 E127-54-00.10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50,000 m<sup>2</sup>

축척 :  $\frac{1}{25,0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1 - 1264호

##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내용 중 특정성의 구성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 조례안 제3조제1항
- 나. 위원회 개최 통지시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련조항 삭제 : 조례안 제10조

###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9월 2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001, 팩스 055-860-370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전화 055-860-3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p>
<p>제10조(참고인 진술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10조 &lt;삭제&gt;</p>